



# 종로구



수신 서울특별시(주거환경개선과장)

(경유)

제목 정화조 변경신고 처리통보(충신동 1-165)

정화조 변경신고서를 아래와 같이 처리되었기 알려드리오니 『하수도법』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정화조를 설치하시고, 공사 후 정화조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## 1. 정화조 변경 신고 처리내역

| 신고인    | 설치장소                  | 변경신고 처리내역 |       |     |      |       |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-|-------|------|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변경 전      |       |     | 변경 후 |       |      |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재질        | 처리공법  | 용량  | 재질   | 처리공법  | 용량   |
| 서울특별시장 | 충신4나길 4<br>(충신동1-165) | PE        | 부패탱크식 | 5인용 | FRP  | 부패탱크식 | 10인용 |



★주무관 송유경 청소행정팀장 배상직 청소행정과장 01/24 배상직

협조자

시행 청소행정과-2179 ( 2018.01.24. ) 접수 주거환경개선과-891 ( 2018.1.24. )  
우 110-701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43(수송동 146-2) / http://www.jongno.go.kr  
전화 02)2148-2365 /전송 02)2148-5825 / nyree@korea.kr / 대시민공개